

#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

개정 2025.10.27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명예학위증서 수여에 관한 제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5.10.27.>

## 제2조 (자격)

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명예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- ①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국가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
- ② 본교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뿐 아니라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
- ③ 기타 명예졸업학위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## 제3조 (인정학과)

명예졸업 학과는 명예졸업 대상자가 본교에 재학했던 학과로 한다.

## 제4조 (수여절차)

- ① 명예학위의 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명예학위증서의 수여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.

## 제5조 (학적부기록)

학적부에 명예학위의 학위번호를 표시하고,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학위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.

## 제6조 (학위취소)

명예학위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, 즉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10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